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2,888,842	23,786,665
일반회계	722,650,452	21,679,514
특별회계	70,238,390	2,107,152
공기업특별회계	51,700,392	1,551,012
공영개발특별회계	1,181,000	35,4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577,286	737,31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942,106	778,263
기타특별회계	18,537,998	556,140
의료급여특별회계	464,178	13,92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5,676	47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3,652	4,610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4,048,471	121,454
균형발전특별회계	1,000,000	30,000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593,301	77,79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583,574	77,50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83,691	20,511
수질개선특별회계	5,767,220	173,01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28,235	36,84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90,14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 지방채(채)